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크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55,280	11,530	0	0	
02월	155,280	11,530	0	0	
03월	155,280	11,530	0	0	
04월	163,280	13,530	0	0	
05월	163,280	13,530	0	0	
06월	163,280	13,530	0	0	
07월	163,280	13,530	0	0	
08월	163,280	13,530	0	0	
09월	163,280	13,530	0	0	
10월	163,280	13,530	0	0	
11월	163,280	13,530	0	0	
12월	0	0	163,280	13,530	
연말정산	93,650	6,180			
합계	1,865,730	149,010	163,280	13,530	
총합계	총합계 2,191,55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71,010	0
02월	71,010	0
03월	71,010	0
04월	71,010	0
05월	71,010	0
06월	71,010	0
07월	72,760	0
08월	72,760	0
09월	72,760	0
10월	72,760	0
11월	72,760	0
12월	0	85,00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	250,000	
실업크리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합계	789,860	350,750
	1,140,61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A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 ⁰ 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 험				
보장성	411-83-04	999	608015**	***	750101-*****	고길동	1,143,000	
	주택보증 주식회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장성	116-81-52	684	A2020-**	***	750101-*****	고길동	99,690	
	DD보험		스마트가정보장보험1701					
장애인보장 성	613-83-00	605	320171****		000101-****	고영수	1,962,000	
	050101-*****	고철수	170101-*****	고둘리				
	인별합계금액		3,204,			,		3,204,69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종류 사업자번호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AB손해보	AB손해보험 무배		이프 Super보			
보장성	212-82-03	154	609003****		810101-*****	홍부인	1,722,730
	750101-*****	고길동					
	인별합계금액		1,72			1,722,73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AB손해보	.험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 에				
보장성	212-82-03	154	512200****		170101-****	고둘리	489,872
	인별합계금액		489,8			489,872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5-95*	AS****	일반	48,330
7-96-04*	Ar****	일반	1,055,070
5-01-58*	HU****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214,000
8-91-03*	HO****	일반	2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127,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14,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341,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2-63*	d <u>o</u> ****	일반	6,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15-95*	AS****	일반	44,200
2-92-63*	d <u>○</u> ****	일반	9,530
7-15-47*	맑은****	일반	4,420
5-03-71*	K산****	산후조리원 비용	3,400,000
8-91-03*	HO****	일반	5,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3,15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3,400,000
인별합계금액			3,463,15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92-10*	세인****	일반	8,800
5-01-58*	HU****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48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484,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92,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2-63*	d <u>○</u> ****	일반	5,600
1-01-47*	OK****	OK*****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82-11*	건강****	건강***** 폐업의료비(비보험제외)	
5-01-58*	H*****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 구 구입비용		9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74,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10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74,8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0-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6-04*	Ar****	일반	8,500
2-92-63*	d <u>○</u> ****	일반	125,800
5-01-58*	P <u>o</u> ****	의료기기 구입비	96,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31,1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31,1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1-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수익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수령금액 계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피보험자		구경급객 계
B손해보험 주식회사	무)생명암보험	109-81-15809	조은 주식회사	2 650 000
201-81-45593	A101-1****	750101-*****	고길동	2,650,000
A화재해상보험	AAA 실손보험	750101-*****	고길동	241,000
411-83-04999	2020-1****	750101-*****	고길동	241,000
인별합계금액				2,891,0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수익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 성크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피보험자		수령금액 계
B손해보험 주식회사	상해실손보험	750101-*****	고길동	854,630
201-81-45593	C101-4****	170101-*****	고둘리	634,030
인별합계금액				854,63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2020년 01~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대학원	***대학원	**5-83-02***	일반교육비	7,500,000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2-82-03***	일반교육비	2,200,000
일반교육비	l 합계금액			9,700,0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2020년 01~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유치원	***유치원	**9-83-02***	일반교육비	1,100,000
학원	***학원	**4-83-00***	일반교육비	2,547,36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3,647,36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2020년 01~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전문대학	***전문대학	**7-82-05***	일반교육비	6,821,60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7-82-00***	일반교육비	2,760,000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 관	**6-82-01***	일반교육비	68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0,261,600
현장학습비	l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중학교	***중학교	**3-82-06***	일반교육비	55,300
중학교	***중학교	**3-82-06***	현장체험학습비	153,480
일반교육비	비 합계금액			55,300
현장학습비	비 합계금액			153,48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수강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직업훈련비 납입내역 (단위:원)

교육기관명	사업자번호	과정명	과정코드	지출금액 계
FF 아카데미	**5-85-44***	건축설계 전문과정(Auto CAD)	BIG-2020-1201248	1,200,000
FF 아카데미	**5-85-44***	디지털디자인고급과정(웹접근 성)	BIG-2020-1202663	189,450
Q 직업학교	**7-19-53***	일본어 중급 2	ACE200062191918	552,000
합계금액				1,941,450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18-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 2. 공제대상금액한도 :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교복구입비 지출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지출금액 계
학교	**4-83-01	48,000
OK 교복	**0-37-75***	52,000
학생교복	**5-01-59***	345,000
인별합계금액		445,000

1. 공제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용

2. 공제 한도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교복구입비와 수업료 등 교육비를 합하여 연 300만원 공제한도 적용)

일련번호: 20201222-0132006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9-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내역

(단위:원)

자료제	출기관	원리금상환액
상호	사업자번호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
장학재단	**4-82-10***	537,225
행복기금	**0-87-71***	869,464
학자금 공사	**4-81-86***	7,881,898
인별합	계금액	9,288,587

- 1. 공제 대상: 학자금대출(등록금 대출에 한정)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
 -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의 종류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20-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2. 공제 한도: 한도 없음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12,551,657	480,000	83,540	290,000	13,405,197
3월분	1,751,650	33,000	3,520	31,000	1,819,170
4~7월분	7,351,637	242,000	23,490	104,000	7,721,127
그외 (1~2월,8~12월분)	3,448,370	205,000	56,530	155,000	3,864,9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09월	10월	11월	12월	
			27,500	23,540	954,600	365,420	
신용카드	[용카드 QWQ카드 (213-86-15419)	일반	842,510	542,100	832,000	631,220	4,484,640
		153,070		47,170	27,750	37,760	
	용카드 QWQ카드 (213-86-15419)		30,000	0	30,000	40,000	
신용카드		전통시장	50,000	60,000	70,000	80,000	402,000
			0	22,000	1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신용카드 QWQ카드 (213-86-15419)	도서공연등	20,000	10,000	20,000	10,000	180,000	
			20,000	10,000	20,000	10,00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756,200	951,720	797,050	312,06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일반	2,861,407	536,270	1,059,870	307,600	8,067,017	
			26,100	271,930	186,810	0		
			1,000	2,000	3,000	4,00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전통시장	5,000	6,000	7,000	8,000	78,000	
				9,000	10,000	11,000	12,000	
			1,700	2,350	3,520	4,46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대중교통	5,090	6,100	7,840	8,500	83,540	
			9,530	10,500	11,300	12,650		
	·드 YAY카드(주) (202-81-48079)		0	0	11,000	11,000		
신용카드		도서공연등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6,863,600	270,410	160,800	447,650	7,742,460
3월분	319,648	0	15,230	32,300	367,178
4~7월분	2,727,098	52,000	35,870	45,050	2,860,018
그외 (1~2월,8~12월분)	3,816,854	218,410	109,700	370,300	4,515,26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103,340	12,460	32,300	0	
신용카드	ETE카드 (120-81-54231)	도서공연등	36,510	0	8,540	0	447,650
			217,200	300	36,700	300	
	카드 HYH카드(주) (202-81-45602)		399,930	0	319,648	518,301	
신용카드		일반	578,227	671,240	959,330	431,440	6,863,600
			1,079,467	695,910	533,202	676,905	
	신용카드 HYH카드(주) (202-81-45602)		0	13,510	0	22,000	
신용카드		전통시장	0	0	30,000	0	270,410
			105,000	67,000	16,200	16,70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61,800	15,230	0	
신용카드	HYH카드(주) (202-81-45602)	대중교통	35,870	0	0	47,900	160,800
			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8,344,550	112,620	232,730	0	8,689,900
3월분	1,338,394	18,000	32,400	0	1,388,794
4~7월분	3,348,853	23,120	49,630	0	3,421,603
그외 (1~2월,8~12월분)	3,657,303	71,500	150,700	0	3,879,50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44,000	18,000	0	
신용카드	RLR카드 (101-86-61717)	전통시장	0	0	23,120	0	112,620
			0	20,000	0	7,500	
			21,200	0	32,400	49,630	
신용카드	RLR카드 (101-86-61717)	대중교통	0	0	0	81,200	232,730
			1,500	23,250	12,650	10,900	
			134,702	817,494	1,338,394	2,230,54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일반	900	862,283	255,130	954,727	8,344,550
			50,393	824,237	376,900	498,85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1222-0132006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장인	60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3,972,590	0	146,050	0	4,118,640
3월분	86,000	0	8,500	0	94,500
4~7월분	570,190	0	60,100	0	630,290
그외 (1~2월,8~12월분)	3,316,400	0	77,450	0	3,393,85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_ , _ ,		09월	10월	11월	12월	
			270,510	154,020	86,000	145,20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일반	179,490	69,500	176,000	475,500	3,972,590
			599,200	124,980	268,480	1,423,710	
			11,250	0	8,500	8,500	
신용카드	YAY카드(주) (202-81-48079)	대중교통	18,750	14,400	18,450	21,250	146,050
			16,300	14,200	14,450	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0	0	0	1,115,980	1,115,980
3월분	0	0	0	183,240	183,240
4~7월분	0	0	0	825,220	825,220
그외 (1~2월,8~12월분)	0	0	0	107,520	107,5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0	0	183,240	421,130	
직불카드 등	ETE카드 (120-81-54231)	도서공연등	192,270	9,820	202,000	300	1,115,980
			70,000	30,800	6,120	3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규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60,000	0	0	0	60,000
3월분	5,000	0	0	0	5,000
4~7월분	20,000	0	0	0	20,000
그외 (1~2월,8~12월분)	35,000	0	0	0	35,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5,000	5,000	5,000	5,000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등 GYOT카드(주) (605-81-39783)	일반	5,000	5,000	5,000	5,000	60,000
		5,000	5,000	5,000	5,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1,540,761	4,880,000	182,410	139,260	6,742,431
3월분	122,002	1,220,000	25,310	65,420	1,432,732
4~7월분	161,357	1,220,000	5,400	49,340	1,436,097
그외 (1~2월,8~12월분)	1,257,402	2,440,000	151,700	24,500	3,873,602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09월	10월	11월	12월	
			0	0	65,420	9,750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등 FGF 은행 (201-81-68693) 도서공연·	도서공연등	18,540	0	21,050	0	139,260
			0	0	0	24,500	
			0	0	122,002	9,600	
직불카드 등	RLR카드 (101-86-61717)	일반	0	151,757	0	25,900	1,540,761
			185,300	4,800	684,992	356,410	
			0	0	1,220,000	0	
직불카드 등 RLR카드 (101-86-61717)	전통시장	0	1,220,000	0	0	4,880,000	
			1,220,000	0	0	1,220,00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1212)			09월	10월	11월	12월	
	직불카드 등 RLR카드 (101-86-61717)	대중교통	0	19,200	25,310	0	
직불카드 등			0	5,400	0	7,500	182,410
		56,200	0	45,800	23,00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30-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둘리	17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0	0	0	300,000	300,000
3월분	0	0	0	100,000	100,000
4~7월분	0	0	0	100,000	100,000
그외 (1~2월,8~12월분)	0	0	0	100,000	1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1812—)		09월	10월	11월	12월		
		0	100,000	100,000	100,000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등 GYOT카드(주) (605-81-39783)	도서공연등	0	0	0	0	300,00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600,000	0	0	0	600,000
3월분	100,000	0	0	0	100,000
4~7월분	100,000	0	0	0	100,000
그외 (1~2월,8~12월분)	400,000	0	0	0	4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18/12-)		09월	10월	11월	12월	
	직불카드 등 GYOT카드(주) (605-81-39783)		0	100,000	100,000	0	
직불카드 등		GYOT카드(주) 605-81-39783) 일반	100,000	0	0	100,000	600,000
			0	100,000	100,00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856,310	205,330	800,000	0	1,861,640
3월분	0	51,000	100,000	0	151,000
4~7월분	646,310	53,110	100,000	0	799,420
그외 (1~2월,8~12월분)	210,000	101,220	600,000	0	911,2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지브리드 드			2,410	41,420	51,000	12,300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물가느 등 (주)제로페이 로페이 (408-81-85459)	전통시장	5,280	12,410	23,120	9,120	205,330
시 6년)			8,240	12,000	12,310	15,720	
지브리드 드		(주)제로페이 (408-81-85459) 대중교통	100,000	100,000	100,000	0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주)제로페이 (408-81-85459)		100,000	0	0	100,000	800,000
7101			0	100,000	100,000	100,000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ZP 카드(주) (107-88-36127) 일반	0	0	0	176,710	
	ZP 카드(주) (107-88-36127)		207,620	153,240	108,740	28,650	856,310
·18 L)			143,800	37,550	0	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1,500,000	0	0	4,000,000	5,500,000
3월분	400,000	0	0	1,000,000	1,400,000
4~7월분	500,000	0	0	1,000,000	1,500,000
그외 (1~2월,8~12월분)	600,000	0	0	2,000,000	2,60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 · - · - /		09월	10월	11월	12월	
지브리드 드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408-81-85459) 일반		500,000	0	400,000	0	
식물가드 등 (제로페이		일반	300,000	200,000	0	0	1,500,000
시 (()		0	100,000	0	0		
11 H J C C	71891- 5		0	0	1,000,000	0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주)제로페이 (408-81-85459)	도서공연등	0	1,000,000	0	0	4,000,000
시 6년)			1,000,000	0	0	1,000,00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제로페이 사용분)]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영수	00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2,940,000	0	0	0	2,940,000
3월분	0	0	0	0	0
4~7월분	2,520,000	0	0	0	2,520,000
그외 (1~2월,8~12월분)	420,000	0	0	0	420,00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상 호 (사 업 자 번 호)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1212)			09월	10월	11월	12월	
-14-1			0	0	0	1,000,000	
직불카드 등 (제로페이 사용분)	ZP 카드(주) (107-88-36127)	일반	150,000	720,000	650,000	100,000	2,940,000
시6正)			200,000	120,000	0	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1,420,300	2,748,641	689,360	1,191,210	6,049,511
3월분	100,000	54,460	4,600	1,000,000	1,159,060
4~7월분	253,680	504,430	386,550	175,020	1,319,680
그외 (1~2월,8~12월분)	1,066,620	2,189,751	298,210	16,190	3,570,77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공제대상금액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67,600	0	100,000	124,000	1,420,300
		24,000	40,000	65,680	40,000	
		67,420	102,700	350,000	438,90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7,400	25,000	54,460	25,660	
		174,600	7,920	296,250	498,990	
		491,000	18,990	1,101,610	46,761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1,890	0	4,600	0	689,360
		24,900	16,900	344,750	0	
		130,640	90,700	69,140	5,8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1,000,000	48,11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107,000	19,910	16,190	1,191,21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334,320	1,513,296	157,600	0	2,005,216
3월분	25,580	25,620	0	0	51,200
4~7월분	251,200	203,949	88,500	0	543,649
그외 (1~2월,8~12월분)	57,540	1,283,727	69,100	0	1,410,367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45,540	580	25,580	58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8,540	8,660	233,420	4,900	334,320
		4,520	0	0	2,000	
		25,620	30,020	25,620	27,93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41,710	95,880	38,429	1,061,397	1,513,296
		61,390	61,450	0	43,850	
		0	18,48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0	88,500	8,500	157,600
		0	16,060	26,06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집계(월별,사용처별)내역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0년 합계	315,360	448,832	265,350	0	1,029,542
3월분	11,600	35,620	0	0	47,220
4~7월분	217,490	135,200	150,850	0	503,540
그외 (1~2월,8~12월분)	86,270	278,012	114,500	0	478,78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01월	02월	03월	04월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7,310	16,000	11,600	21,16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4,490	117,840	54,000	17,840	315,360
		15,000	12,530	7,800	9,790	
		9,790	27,922	35,620	35,62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44,980	27,300	27,300	51,850	448,832
		51,850	24,330	39,830	72,440	
		39,830	5,00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39,320	111,530	0	0	265,350
		10,610	0	29,530	29,53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개인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개인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증권번호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납입금액 계
A협동조합중앙회	219-82-01220	044112****	1996-07-23	2021-07-23	2,760,000
C금융투자	116-81-36684	030011****	1994-08-25	2021-08-25	3,300,000
합 계					6,060,000

※ 개인연금저축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납입금액	인출금액	군답답금액	
A협동조합중앙회	219-82-01220	4,000,000	0	4,000,000	
98310	2****	4,000,000	0	4,000,000	
B증권주식회사	202-81-48588	1 100 000	0	1 100 000	
98310	12****	1,100,000	0	1,100,000	
순납입금	금액 합계			5,100,0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연도 납입금액	당해연도 납입액 중 인출금액	순납입금액
계좌번호	연금구분	납입금액	인출금액	
B증권주식회사	202-81-48588	3,800,000	1,800,000	2,000,000
7072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800,000	1,800,000	2,000,000
C금융투자	116-81-36684	1,000,000	1,000,000	0
7072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00,000	1,000,000	o l
순납입금	금액 합계	2,00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 2. 공제 대상: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42-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초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사업사인모)	(영급명)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내장책
U 새마을금고 (200 06 2001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주	2019-08-31 2039-08-31	20년	2019-08-30	2019-08-31	1,770,512	1,770,512
(209-06-29912)	(주택자금대출(주 택구입자금대출))	25,000,000	0	25,000,000	0		
JM 은행(주) (104-86-39742)	해당없음 (주택자금대출)	2015-05-15 2035-05-15	20년	2012-10-31	2012-10-16	7,167,652	5,000,000
(104-00-39/42)	(구택시금내물)	0	0	0	0	. ,	. ,

- 1.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OU은행	201-81-02819	132040****	2010-05-31	1,515,720
FGF 은행	201-81-68693	648009****	2016-07-28	1,984,847
FGF 은행	201-81-68693	648009****	2016-08-26	3,223,401
합 계				6,723,968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44-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월세액]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월세액 지급내역 (단위:원)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계약서상 주소지	계약면적 (m²)	지급액 계
주인장 870330-*****	2019-05-01~ 2020-04-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2016동 8104호	57	8,000,000
주인장 870330-*****	2020-05-01~ 2021-04-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2016동 8104호	57	16,000,000
합 계				24,000,000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
- 3. 공제율 : 10%.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는 12%
- 4.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2020년 01~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QQ 은행 (617-19-68038)	431807****	청약저축	청약저축	1981-05-28	1,200,000
TT은행 (209-06-32493)	527107****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6-16	600,000
MM은행 (310-06-89734)	365910****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05-12	1,200,000
합 계					3,0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46-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펀드명	가입일자	연납입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FGF 은행 (201-81-68693)	854755****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 제	2014-04-08	2,200,000	880,000
YES은행 (202-81-00978)	250084****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 제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	2014-04-30	6,000,000	2,400,000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가입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소득공제 배제 : ①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②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공제하지 아니함

-4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기간 : 2020년 01 ~ 12월)

■ 투자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투자금액 명세 (단위:원)

납입연도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투자신탁명	투자금액 계
2020	JM 은행(주) (104-86-39742)	546555****	A투자증권	3,000,000
2020	JM 은행(주) (104-86-39742)	028048****	B코스닥A	100,000
2020	FGF 은행 (201-81-68693)	028048****	C코스닥Ae	500,000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공제부금 납입현황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입일자 / 개정규칙 적용 여부	납입방법
201609****	2016-09-22	91Lt(Month)
201009	Υ	월납(Month)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2020-01-25	750,000	07 월	2020-07-25	750,000
02 월	2020-02-27	750,000	08 월	2020-08-25	750,000
03 월	2020-03-27	750,000	09 월	2020-09-03	750,000
04 월	2020-04-25	750,000	10 월	2020-10-25	250,000
05 월	2020-05-25	750,000	11 월	2020-11-27	250,000
06 월	2020-06-26	750,000	12 월	2020-12-26	250,000
납입	입금액 계				7,500,000

1.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일련번호: 20201222-01320067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9-

2020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길동	7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03-82-00639	BLD기부단체	법정기부금	60,000	60,000	0
126-82-13220	나눔의집(사회보장 정보원)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00,000	100,000	100,000
_**	*1	정치자금기부금	1,000,000	1,000,000	0
인별합계금액					1,16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12-82-00240	발전기금재단(재)	법정기부금	5,000,000	5,000,000	0
인별합계금액					5,0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조회기간 : 2020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철수	050101-*****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14-82-08005	재단법인 지역발전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00,000	200,000	0
인별합계금액					20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